

제335회 임시회
2014. 10. 24.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행정문화위원회

「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4. 10. 24.(금)
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김영주 의원 외 6명

나. 제출일자 : 2014년 10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0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10월 15일

-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영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,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 변경(안 제8조제1항)

- 안전관리를 위해할 경우,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능 한 경우
⇒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
⇒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
○ 시설의 원상복구 절차 변경(안 제10조제3항)

- 변경한 시설을 방치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을 임의로 처분
⇒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○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류 간소화(별지 제1호 서식)

- 사용계획서, 작품 목록, 프로그램 ⇒ 사용계획서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한철우)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, 시설의 원상복구 절차를 변경 및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8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4년 10월 2일

발의자 : 김영주, 임희무, 엄재창
연철흙, 윤은희, 최광옥
최병윤

1. 개정이유

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,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 변경(안 제8조제1항)

- 안전관리를 위해할 경우,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능 한 경우
⇒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
⇒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
나. 시설의 원상복구 절차 변경(안 제10조제3항)

- 변경한 시설을 방치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을 임의로 처분
⇒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다.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류 간소화(별지 제1호 서식)

- 사용계획서, 작품 목록, 프로그램 ⇒ 사용계획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

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5조제1항

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생략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
2. 공공질서와 건전한 풍속을 해할 경우
3.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문화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
4.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
제10조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호 서식]

충북문화관 사용·변경(취소) 신청서(제5조제1항 관련)

【현 행】

신청인	성명 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명)		전화 (FAX)	자택 (사무실)	
	주소			휴대폰	
전시.행사명					
시설물 사용내용					
사용기간	년 월 일 시	년부터	(일간 회)	행사참가인원	명
변경(취소) 신청	신청사유 : 변경사항 :				
「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		
붙임 1. 사용(행사)계획서 1부 2.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. 3. 전시.행사프로그램(포스터, 리플릿, 입장권 견본 등) 1부.					
신청자(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)				년 월 일	(인)
충청북도지사 귀하					

【개정안】

신청인	성명 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명)		전화 (FAX)	자택 (사무실)	
	주소			휴대폰	
전시.행사명					
시설물 사용내용					
사용기간	년 월 일 시	년부터	(일간 회)	행사참가인원	명
변경(취소) 신청	신청사유 : 변경사항 :				
「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		
붙임 : 사용(행사)계획서 1부					
신청자(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)				년 월 일	(인)
충청북도지사 귀하					

신.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할 경우</u></p> <p>4. <u>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</u></p>	<p>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문화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</u></p> <p>4. <u>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</u></p>
<p>제10조(문화관 시설의 변경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기간 만료 후에도 변경한 시설을 방치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10조(문화관 시설의 변경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익계약(隨意契約)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<개정 2010.2.4., 2014.1.7.>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2.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

③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·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(原狀)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·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8.12.26.]

제25조(사용·수익허가의 취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한 경우
2.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
4.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5.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·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·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·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. [전문개정 2008.12.26.]